## 2017 농식품 스타콜라보 마케팅 사업 정산기준

## □ 공통기준

- 모든 사업비용은 **스타콜라보 마케팅 지원과 직접 관련**하여 집행된 경비에 한함
- 사업비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하며, 불가피하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
  -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시 대금입금 확인서 등 추가 제출(공사 요구 시)
- O 약정기간 내 증빙자료만 유효하며 해외 현지 업체와 대행업무 체결 시 약정서류 및 증빙 제출 필수
- 해외 현지 화폐 집행 비용은 사업기간 평균 최초 고시 전신환 매도 평균 환율 적용
- O 아래 항목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공사와 협의, 승인 후 추진
  - 총 사업예산의 30% 이상의 사업변경 건에 대해서는 승인 필요

## □ 정산불가항목

- 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및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
- 홍보 제품의 직접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벤트
- 선정업체(직원)의 행사 점검을 위한 출장비, 숙박비, 교통비
- 기존 aT 수출지원사업의 홍보마케팅 비용과 중복되는 사항
- O 홈페이지 제작 관련 비용
- 국내에서 발생된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항목 지원 제외
- O 비품 구매는 소모품 구매만 인정(자산구입 불인정)

## □ 정산항목별 세부지침

지원항목	정산기준	증빙서류
	○ 콘텐츠 제작 이용료 -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촬영	○ 선정업체 실질 발생비용 적용 - 콘텐츠 이용 및 제작 계약서(금액표시) - 세금계산서, 예산사용내역 일체 - 최종 홍보 콘텐츠 제작 결과물 증빙(사진 등) - 대금 납부 증빙(선정업체 직접 지출 증빙)
콘텐츠 해외 홍보	○ 콘텐츠 온·오프라인 홍보 - 현지 언론매체, 잡지 홍보·광고, 온라인 홍보, 옥외광고, 홍보 판촉물 배포, 제품 런칭 행사 등	○ 선정업체 실질 발생비용 적용 - 광고게재지, 홍보실물 견본(사진 등) 및 관련 증빙서, 인보이스, 계약서(금액표시) 등 - 세금계산서, 해외 송금증 - 활동사진, 배포 리스트 등 * 홈페이지 개발비용 지원 제외